2027년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의 우수한 예술단체와 공공 공연장 간 협력을 통해 공연 창·제작 및 발표 역량을 높이고, 단체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민의 예술 향유 기회 확대 등 공연예술 생태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7년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을 대표할 예술단체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소개

□ 사업 개요

○ (사업명) 2027년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 사업

○ (사업기간) 2027년 2~12월 (공연 기간: ~12월 둘째주, '27.12.13.(일) 종료)

* 사업 평가는 2027년 11월 말 완료 예정

○ (내용)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단체의 성장을 위한 공연 창·제작 및 레퍼토리 개발, 발표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 지원

○ (대상/장르) 서울 外 지역 / 순수예술 4개 장르(연극, 무용, 음악, 전통)

○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예산) 총 80억 원 (자치단체경상보조, 지방비 매칭비율 30~60%)

※ 국회 예산심의·의결에 따라 총 규모 변경 가능

- 단체당 지원금 최소 2억원 ~ 최대 20억원(국비+지방비 총액 기준)

□ 추진체계 및 일정

○ ('26.11.4.) 예술위 - 2027년 공모 공고

○ ('26.11.4.~11.30.) 지자체 - 지역 공연장 지정 및 단체 선정(공연장 협의)

○ ('26.11.30.~12.17.) 지자체→예술위 - 공모 신청(※ 신청 주체: 지자체)

○ ('26.12~'27.1월) 예술위 - 1차 서류심의 및 2차 발표심의

○ ('27.2월 초) 예술위 - 지역대표예술단체 최종 선정

('26.11.4.) 공고		('26.11월) 지자체 내 협의		('26.11.4~12.17.) 신청 접수		('26.12~'27.1월) 심사		('27.2월 초)
공모 공고	⇨	공연장 지정 및 지역단체 후보 선정, 공연장 협의	⇨	공모 신청	⇨	1차 서류심의 2차 발표심의 (지자체, 공연단체, 공연장 참여)	⇨	최종 선정 (보도자료 배포)
예술위		지자체		지자체→예술위		예술위		예술위

2 공모 요강

□ 지원 대상 및 장르

○ (지원대상) 서울 外 지역 소재 예술단체

- ▲신설 공립단체*, ▲기존 민간단체, ▲서울 단체 지역 유치** 등

* 본 지원사업을 계기로 공립예술단체를 신설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예술단체의 주소지 이전 또는 지역에서의 체류 등 필수

○ (연속/신규) 기존 선정단체와 신규 지원단체 유형을 구분하여 지원

- 기존 선정단체 60%, 신규 지원단체 40% 수준으로 선정

※ 기존 선정단체와 신규 지원단체 선정 비율은 지원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 제외 단체

· **기존 공립예술단체*(단, 공립예술단체를 신설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 **지자체 조례로 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예술단체이거나, 운영주체가 지자체 또는 지자체 소속 문화재단인 예술단체이거나, 단체명에 '도립', '시립', '군립' 등이 포함되어 있는 예술단체**

· 초·중·고·대학생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아마추어 단체 포함)
· 종교 관련 기관 및 소속단체
· 대중음악 등 순수예술 외 공연 위주의 단체
· 개별 단체가 아닌 협회·연합회 또는 협회·연합회의 지역 지부
·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보유단체
· 지역축제 사무국 또는 축제기간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 (지원장르) 순수예술 4개 장르(연극, 무용, 음악, 전통)

장르	세부 장르 예시	비고
연극	연극, 마임, 인형극, 가무악극, 뮤지컬 등	
무용	한국·전통무용, 발레, 현대무용 등	스포츠댄스, 무예 제외
음악	실내악, 교향악, 오페라, 오페라 합창 등	대중가요, 영화음악, 시낭송회, 팝스오케스트라 제외
전통	정악, 민속, 관현악, 풍물, 연희 등	-

※ 신청 지자체 당, 기존 선정단체 포함하여 장르별 1개 단체 신청 가능(최대 4개 단체 신청 가능)

※ 공립단체 신설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공립예술단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장르에 대한 공립단체 신설 권장. 다만, 공립예술단체를 보유하고 있는 장르에 대해 추가로 공립단체를 신설하는 경우, 인력 구성(청년), 세부 장르 등으로 특화하여 신설 권장

※ 둘 이상의 장르가 융합된 경우, 작품의 주된 예술적 표현방식 및 구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장르로 신청

○ (지원방식) 지자체·공연장·예술단체 협력형 지원

지자체	공연장·예술단체	지자체	공연장·예술단체
공공 공연장 지정 및 예술단체 선정 ⇨	협의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예산 편성 ⇨	사업 공모 신청 및 선정 후 교부신청 ⇨	(공연장) 보조금 집행·관리 및 정산 (예술단체) 사업수행

□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내용) 예술단체의 사업비(공연 창·제작 등) 지원

○ (지원규모) 총 40개 내외(변동 가능)

- 단체당 최소 2억원, 최대 20억원(국비+지방비 총액 기준)
-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방비 매칭비율 차등 적용

재정자립도*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지방비 매칭비율	30%	40%	50%	60%

※ **"2024년 결산 재정자립도 개편 후"**를 기준으로 함 (지방재정 365 참고자료 참조)

※ 지방비 매칭비율은 총사업비 대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최소 비율이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추가 지방비 편성 가능**(지자체별 지원규모 제한은 없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2024년 결산 재정자립도 개편 후" 기준 세입결산규모 및 자체수입을 총합한 **재정자립도 결과(28.38%) 기준**으로 매칭 비율 적용

○ (지원기간) 단년

- **최초 선정 연도***를 포함하여 **단체별 최대 5년** 지원 가능

 * **2024, 2025년 선정 이력은 1년 지원**받은 것으로 산정(2024년 선정 및 2025년 미선정, 2025년 신규선정, 2024년~2025년 연속지원 동일)

 ※ 기존 선정된 지자체·공연장·단체 **지원구조 중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신규 지원단체'** 유형으로 신청(단, **공연단체는 지원구조 변경과 관계없이 최대 5년까지 지원가능**)

- **기존 선정단체**의 경우 심의 시 **2027년도 사업계획 및 2026년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차년도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지원 조건

① 예술단체 - 공연장* 간 사전협의 및 협력 계획 수립·제출

* (공공 공연장) ▲문예회관(전국 문화시설 총람 기준), ▲기타 공공 공연장(총람 등재된 문예회관 외 지자체 설립 또는 공기업에 의한 설립 및 위·수탁 운영 중인 공연장)

- 예술단체와 공연장은 작품 창·제작, 공연 운영, 관객개발 및 홍보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역할분담 및 협력계획 수립

※ 예술단체와 공연장은 사업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을 각 1인 이상 고용 및 예산 편성 가능

② 공연작품 1개 이상 창·제작 또는 기존 레퍼토리 고도화

- 신작 창·제작 또는 기존 작품의 재공연·보완 등을 통한 단체 대표 레퍼토리 개발·고도화

③ 해당 지자체* 내 3개 이상 지역에서 총 6회 이상 공연

- 협력 공연장을 포함하여 3개 이상 공연장에서 공연 추진

* 해당 지자체는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인정하며, 인접 광역지자체에서의 공연도 인정

※ 협력 공연장을 포함한 3개 이상 공연장(지역)에서의 공연 계획 제출 필수

④ 유료공연 운영 및 공연정보 등록

- (티켓) 장당 최소 정가 1,000원 이상 책정 및 온라인 티켓 예매·발권 필수

※ 공연 티켓 할인 정책은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공연정보 및 티켓 판매정보 제공 필수

- (수익금) 예술단체·공연장 간 수익금 분배 방식* 사전 협의 필수, 사업 종료 후 수익금 정산보고 및 사용계획서 제출 필수

* 수익금 분배 여부, 수익금 분배 시 분배 방식 및 비율 등 사전 협의

⑤ 사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단원 구성·운영(지역예술인 참여 권장)

□ 우대 조건 (각 5점)

① 본 지원사업을 계기로 2027년에 공립예술단체를 신설하는 경우

②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신청 지자체가 선정한 예술단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참고 ▶ 링크)

□ 지원 유의사항

○ 아래 사항 중 한 곳에 해당할 경우, 지원 불가

※ 선정 이후에도 지원불가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 **각 지자체의 "2027년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7년 공연예술창작주체", "지역예술활성화"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는 경우**
· 기획재정부「보조금법」제31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기관 및 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
· 임금체불 단체(고용노동부 임금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되는 등)
· 세금 체납 등의 사유로 e나라도움 상 사업등록이 불가한 단체
· 보조사업 수행 후 정해진 기한 내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 부정수급·미정산 등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반납하지 않은 보조사업자
· 문화체육관광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정된 단체 또는 기관

○ 기타 준수사항

· (교부신청·집행·정산) 선정 이후 지자체는 국비를 교부 신청하여 지방비와 함께 공연장으로 재교부하고, 공연장의 운영주체가 사업비 집행·관리 및 정산 수행
 * 공연장과 예술단체는 사업 착수 전 사업비 집행 절차, 계약·지출 방식 및 역할분담 등에 대해 사전 협의
· (서면 계약 체결) 사업 수행과 관련한 모든 계약은 서면 계약 체결 필수
 * 기존 계약서 양식이 없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활용 권장
· (참여예술인 사례비 지급) 사업 참여 예술인·스태프의 적정 사례비 지급
 * 계약·협의한 사례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지급하거나 지급 후 반환을 요구하는 행위 등 금지, 발각 시 전액 환수 조치
· **(상해/산재보험 가입) 사업참여자 전원 상해보험 및 산재보험 필수 가입**
 * 사업참여자 전원 상해보험 및 산재보험 모두 필수 가입해야 하며, 보험 가입 증명 서류를 공연 전 공연시설에 제출하고 공연시설이 확인·관리 필요. 상해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하지 않고 공연을 진행할 경우 차년도 사업 참여 불가
· (공연정보 아카이빙 정보 제출) 공연 영상·사진, 디자인·홍보물, 참여인력, 공연실적 등 사업성과 및 아카이빙 자료 제출
· (모니터링·평가 참여) 사업 선정 시,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참여·협조 필수

□ 예산 편성 세부기준

○ 총 사업비 내 30~60% 지방비 매칭 책정 필수

< 예산편성 항목 예시 > (보조사업비 편성 기준 공모신청서 참고자료 참조)

목	세목	국고보조금	지방비	비고
인건비 (110)	**기타직보수(02)**	- 문예회관 전담 기획인력 기간제 인건비 - 공연단체 전담 기획인력 기간제 인건비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01)**	- 연출, 출연진 등 전문인력 사례비 - 홍보·마케팅비 - 물품운송비 - 회계검증수수료**(필수)**		* 홍보·마케팅을 위한 부대 프로그램, 워크숍 운영 가능 * 회계검증 필수
	공공요금 및 제세(02)	- 상해보험료(필수), 산재보험료(필수), 화재보험료, 행사보험료 등		* 사업참여자 가입 필수
	임차료(07)	- 공연장 및 연습공간 임차료 - 의상 및 소품 등 물품 대여료		

	복리후생비(12)	- 예술인 고용 보험료(사업주 부담분)**(필수)**	* 작품 활동기간 산정하여 사업주 부담분 납부
	일반용역비(14)	- 무대 제작 용역비 - 의상 및 공연소품 제작 용역비 - 조명 및 음향 용역비 - 홍보마케팅 대행 용역비	
여비 (220)	**국내여비(01)**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해 타지역 체류에 한해 책정

※ (국비 편성 불가 항목) 상근인력 인건비, 단체 및 기관 운영 관련 비용(소모품비, 사무기기 임차료 등), 자산취득비(악기 구입비 등), 회의진행 경비(다과, 식대 등)

· **(단체 대표 사례비)** 주요 역할(연출, 안무, 예술감독 등)에 참여할 경우 사례비 책정할 수 있으나, 본 사업 내 다른 역할 수행을 통한 중복 집행 불가능

· **(회계검증수수료 편성 및 집행)**「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직·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1억원 이상일 경우 회계검증 필수

* 회계검증수수료 단가 예시(202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계검증수수료)

총 사업비(국고보조금+지방비)	회계검증수수료(원)
1억원이상 2억원미만	908,000
2억원이상 3억원미만	957,000
3억원이상 4억원미만	988,000
4억원이상 5억원미만	1,032,000
5억원이상 6억원미만	1,181,000
6억원이상 7억원미만	1,240,000
7억원이상 8억원미만	1,302,000
8억원이상 9억원미만	1,367,000
9억원이상 10억원미만	1,435,000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875,000
1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2,275,000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2,500,000

3 심의방식 및 기준

□ 심의방식

○ **(지자체 사전검토)** 지자체에서 협력 공연장 및 예술단체를 선정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 수립, 제출

○ **(예술위 심의)** 서류심의 및 발표심의를 거쳐 지원단체 최종 선정

- **(서류심의)**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등 공모요건 충족 여부 검토
- **(발표심의)** 장르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단체 역량 및 사업계획 종합 심의**(※ 발표심의에는 지자체·예술단체·협력 공연장 관계자 공동 참여)**

□ 심의 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사업수행 역량 (25%)	- 단체의 예술적 역량과 성과는 우수한가? - 주요 구성원 및 참여 인력의 예술적·전문적 역량은 우수한가? - 사업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공연 창·제작 계획의 우수성 (30%)	- 작품의 창작 의도와 예술적 방향이 명확하고, 단체의 예술적 특성과 강점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 작품의 내용·구성 및 창·제작 계획이 충실한가? - 향후 단체를 대표하는 우수한 레퍼토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가?
지자체·공연장·예술단체 협력체계의 적정성 (25%)	- 지자체, 공연장, 예술단체 간 역할 분담이 명확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위한 추진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 지자체의 행정·정책적 지원, 공연장의 공간·기획·관객 기반, 예술단체의 창작·제작 역량 등 각 주체의 자원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는가?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발전가능성 (20%)	- 추진 일정, 참여 인력 및 예산 등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게 계획되어 있는가? - 관객개발·홍보 및 공연 운영계획이 작품의 특성과 목표관객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동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발전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4 공모신청 안내

□ 공모신청 방법

○ (신청대상) 지방자치단체(기초, 광역 무관)

○ (신청기간) ‘26. 11. 4. (수) ~ 12. 17. (목) 15:00

○ (신청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에서 온라인 신청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불가)

· 접수 마감일 14:00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을 완료한 회원만 신청 가능
· 신청 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기본정보, 활동 이력 현행화를 완료한 회원만 신청 가능
· 신청 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 확인서, 신청자격 체크리스트, 청렴이행 서약서,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확인·동의 후 신청 가능
· 사전검토 단계 결격사유 : 타 사업에 지원신청(시스템 신청과정에서 사업선택 오류),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다른 사업의 지원신청서 양식 사용, 필수 제출서류 첨부파일 누락·오류, 기타 각 사업별 결격으로 규정한 사유

○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확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예술단체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등)

□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극무용팀, 음악전통팀

- 연극·뮤지컬 분야 : 061-900-2207
- 무용 분야 : 061-900-2224
- 음악 : 061-900-2251
- 전통예술 : 061-900-2335

* 문의 가능 시간 : 월~금 10:00~17:00(점심시간 제외)